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76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충남도청(내포) RM5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31호(2021.07.02.)로 승인(변경) 고시된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 내 RM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2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 내 R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)
2. 사업시행자
 - 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시행지역 :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 내 RM5BL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 - 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